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중인데 ‘씽씽’ 일시정지·추월금지 아무도 안지켜

광주 어린이 통학버스 따라가 보니

막무가내 경적 울리고 추월 다반사 어린이 안전 도외시한 운전 여전 아이들 하차할 때마다 ‘불안불안’ 경찰, 보호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서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메이루즈 앞 도로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한 외제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반리젠 시빌 5차 아파트와 대주파크빌 1차 아파트 사이 편도 1차로 도로 앞.

노란색 유치원 통학버스가 멈춰섰다. 버스가 멈추면서 탑승문이 열리는 순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옆에 설치된 빨간색 정지 표시판이 펼쳐졌다. 차량 뒤쪽의 비상등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적색 표시등도 동시에 깜빡거렸다.

정지 표시판은 ‘어린이가 움직이고 있으니 멈춰달라’는 의미로, 운전석 문 바깥쪽에 달며 어린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진다. 다른 차량들에 경고 표시를 보내는 것으로, 정지 표시판이 펼쳐지면 인근 차량들은 잠시 멈춰 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의 경우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벌점(30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자 뒤따르던 마을버스는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 추월했고 반대편 차선에서도 잠시 멈춘 차량은 없었다.

일부 차량은 ‘왜 빨리 안가느냐’고 항의하듯 경적을 울려대기도 했다.

편도 2차선 도로도 비슷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메이루즈 아파트와 미즈피아산부인과 사이 도로에 통학버스가 멈추며 정지표시판과 비상등, 표시등이 깜빡거렸지만 어느 차량도 멈추지 않았다. 수입차는 1차선을 빠르게 통과했다.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1월 27일)에 맞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 위반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 정지 후 서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게 전남지방경찰청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들 습관대로라면 무더기 위반 차량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유치원 통학버스를 따라간 결과, 단 한대의 차량도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했다는 이모(65)씨는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경적을 울려대고 추월해 가니 일수”라며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은 것 같은데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투덜댔다.

경찰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만, 운전자들의 관행적인 운전 습관을 고쳐, 올해 말까지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혐의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규정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 계도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징벌 조사 기한 넘기고 재소자 독거실 수용·TV 시청 제한 “광주교도소 위법…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법적 기한을 넘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소자를 독거실에 수용하고 TV 시청을 제한한 광주교도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가 교도소측 위법 행위로 입은 재소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수용생활 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독거실(타 수용자와 접촉없이 홀로 지내는 방)에 수용되면서 TV 시청 제한 조치 등을 받았다. A씨는 또 해당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돼 금지(禁置)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

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규칙 등을 따르지 않았고 기한을 연장한 것도 10일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벌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규정은 수용자 기본권 보장 측면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관련 증거들에 따라 교도소측은 A씨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조사를 연장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한 조사에 따라 A씨를 독거실에 수용하고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행위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가는 적법한 조사기간 만료 이후 받은 A씨의 처우 제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질 의무가 있다며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압수수색 영장 흘리고 다닌 경찰

영장 집행 후 회수 않고 철수…피의자에게 뒤늦게 돌려받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갔다가 피의자에게 뒤늦게 돌려받는 일이 벌어졌다.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침해’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개인 정보, 수사 내용 등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조차 소홀히 다루는 등 무신경한 수사를 펼치면서 불신감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제시했던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하지 않고 철수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죄명·압수물건, 수색의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유효

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 가족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진행한 뒤 집행을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영장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장을 가져가라는 피의자측 연락을 받고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무실과 차량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영장을 돌려받는 것을 잊어버렸다”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흥서 캠핑버스 ‘차박’ 하다 참변

4명 사상…가스 중독 추정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를 타고 고흥으로 낚시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4명이 잠을 자다 가스를 흡입해 1명이 숨졌다.

14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고흥군 금산면 한 주차장에서 ‘차박’ 중이던 동료들이 의식이 없다는 A(54)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명은 한기나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2일 광주에서 고흥 금산면 거금도로 낚시여행을 떠났고 고흥에 도착하자 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족들은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차량을 발견했다.

이들은 잠들기 전 버스 시동을 끄고 경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차량 감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가격리 중 필로폰 구하려 전국 돌고 환각 상태 운전

징역 1년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땅땅땅!”

자가격리 기간 중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 6월 14일 까지 ‘차박에서 격리’하라는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보를 받고 대구·서울과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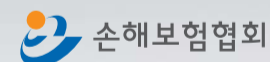
A씨는 지난 6월 8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구로 가 필로폰 1g을 구입해왔고 11일에는 다

시 서울로 가 필로폰 0.11g을 구입하는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A씨는 또 지난 6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타고 8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필로폰 구매를 위해 대구·서울 등으로 이동해 감염병 확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8km를 운전,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형(刑)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